

의안 번호	104
----------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3. 27.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104호

다. 제출일자 : 2023. 03. 13.

라. 회부일자 : 2023. 03. 20.

2. 제안이유

- 우리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3. 5. 31.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89-6
- 규 모 : 대지 257㎡, 연면적 477.80㎡ (지하1층/지상3층)

나. 위탁기간 : 2023. 6. 1. ~ 2026. 5. 31.(3년)

다.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라. 수탁기관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마. 위탁사무 :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청소년 문화공간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그 밖에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바.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사. 선정방법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이하 "누림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2023.05.31.자로 "누림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체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임. 위탁대상 현황 및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음.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시설현황	소요예산	위탁기간	운영주체	운영조직
장위청소년 문화누림센터	- 위치 : 성북구 장월로 89-6 - 규모 : 477.80㎡ (지하1층/지상3층)	379,271천원 (구비)	2020.6.1. ~ 2023.5.31. (3년)	(사)한국청소년 한마음연맹 (센터장 : 김상찬)	총 4명 - 센터장 1 - 직 원 3

<시설현황>

층 별	주요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상3층(93.01㎡)	우리누림(청소년 자치공간)	청소년 파티룸, 요리체험,
지상2층(132.09㎡)	사무실, PC검색대, 다다누림(청소년 학습공간)	청소년 프로그램, 학습활동
지상1층(114.98㎡)	아띠누림(청소년 카페)	보드게임, 다트, 커뮤니티 활동 등 자유공간
지하1층(137.72㎡)	라운누림, 헤유투룸 (청소년 활동공간)	VR체험, 홀로그램, 1인미디어, 댄스연습

<운영실적>

연도	이용자 현황		운영 프로그램 현황	
	전체 이용자수	청소년 비율	세부 프로그램 수	참여인원
2020년	983명	73%	7	390명
2021년	10,691명	86.3%	29	6,132명
2022년	17,553명	84%	35	11,519명

□ 민간위탁 및 재계약 적정성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1)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2)규정에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 위탁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3)에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추진은 가능할 것이며, “누림센터” 의 재계약을 위해

1)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실시한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평균 87.5점으로 준수한 편으로 위탁사무의 수행을 무리없이 수행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성과평가 결과>

연번	평가영역	배점	점수	연번	평가영역	배점	점수
1	운영 및 관리	11	10.4	5	시설기준 및 안전	20	18.9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4	12.2	6	대외협력 및 홍보	5	4.3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20	12.8	7	종합 평가	10	9.5
4	인사 및 조직	20	19.4	총점		100	87.5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본 사무의 재계약은 추진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